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명확화(안 제2조제2항)

- 위원의 연임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화

나.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(안 제2조제4항)

-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(행정1부시장)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분쟁조정법」 제4조 및 제15조 제2항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~7. 5.) 결과: 붙임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전예담(☎2133-4251)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위원회 구성)”을“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임자”를 “전임자 임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(1)부시장이 되고”를 “행정1부시장이 맡고”로,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서울특별시 환경업무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업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위원을”을 “해당위원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심신쇠약으로”를 “심신쇠약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 중 “있는”을 “있거나,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

부분)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, “되고”를 “말고”로, “된다”를 “말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</u>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</u>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<u>행정(1)부시장</u>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「환경분쟁 조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</u>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<u>위원장</u>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위원을</u>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한 차례만 연임</u>-. --- ----- <u>전임자 임기</u>- -----.</p> <p>③ ----- -- <u>행정1부시장</u>이 <u>맡고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업무</u> - -----.</p> <p>④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<u>해당 위</u></p>

해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(생략)

제3조(위원회의 사무처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.

원을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심신쇠약-----

3. -----
있거나,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-----
--

<삭제>

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3조(위원회의 사무처리 등) ①

시 -----

-- 맡고-----
맡는다.

② 위원회에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임

4. 작성자

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, 전예담(☎2133-4251)